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·형사상 면책적용기준을 “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”에서 “안전사고관리 지침¹⁾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”로 구체화하고,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 뿐 아니라 “보조인력”을 포함함(안 제10조제5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대상에 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²⁾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
- 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·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.
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,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보조인력”)이

그런데,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보조인력에 대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제가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

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「형법」 제1조 등³⁾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도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므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,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례를 통해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재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고려되어질 사항이라는 점,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로서 이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, 현행법에 보조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최근에 신설된 점⁴⁾을 감안하여,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3) 「**형법**」 제1조(범죄의 성립과 처벌)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.

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(舊法)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(新法)에 따른다.

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.

[2009헌가9등 (2009헌가9, 2010헌가30)]

4) 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67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개 정 안	수정의견
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